

의안번호	2217755
의 퇴 인	정일영 의원
회 답 일	2026.4.7.
추 계 번호	26E13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세액공제 확대 및 근거법률 변경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근거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하고, 공제액과 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2,030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1조 8,270억원(연평균 3,654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확대 및 근거법률 변경 (안 제59조의6)	-2,030	-4,060	-4,060	-4,060	-4,060	-18,270	-3,65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신설 - (현행) 2024.1.1.~2026.12.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u>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u>(「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027.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u>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향후 2년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공제</u>(「소득세법」) (시행일: 2027. 1. 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시행일 및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2032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7. 1. 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2024.1.1.~2026.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생애 1회 한정)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종료에 맞추어 동 제도의 근거법률을 「소득세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도를 확대·향구화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 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수는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2012~2022년 동안 매년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혼인건수의 변화 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5년 실적을 활용
-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 및 혼인신고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총급여 및 종합소득 규모별 비중은 2024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임
 -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각각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
 - 동 제도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 도입었으며,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됨
- 동 제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하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혼인세액공제 신청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계

나. 추계방법

(1) 근로소득자분 세수효과 추계

- 2024 귀속연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26.6%로 나타남
 - 혼인신고자 수는 2024년 혼인신고 건수의 두배($444,824\text{명} = 222,412\text{건} \times 2$)로 산출
 -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은 118,131명으로 나타남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기준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진행한 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표 2] 근로소득자의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 2024 귀속연도

(단위: 명, 건, 백만원)

총급여 규모	혼인세액공제		결정세액	
	인원 ¹⁾ (A)	금액	인원	금액
계	118,131	58,583	118,131	544,852
1천만 이하	0	0	0	0
1.5천만 이하	1	0	1	0
2천만 이하	11	0.3	11	0
3천만 이하	331	39	331	22
4천만 이하	5,901	2,752	5,901	1,374
4.5천만 이하	11,019	5,460	11,019	5,550
5천만 이하	14,208	7,082	14,208	12,201
6천만 이하	27,502	13,729	27,502	41,256
8천만 이하	30,601	15,287	30,601	95,526
1억 이하	14,837	7,417	14,837	99,267
2억 이하	12,829	6,414	12,829	198,216
3억 이하	618	309	618	32,491
5억 이하	229	114	229	22,786
10억 이하	36	18	36	7,562
10억 초과	8	4	8	5,369

주: 1)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있는 신청 인원에서 종합소득세 중복 신고인원(총 21,506명)을 제외한 수치임. 참고로,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5,689명으로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2025)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혼인신고자 수에 앞서 산출한 혼인신고자 대비 근로소득자인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 비중을 곱해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하고, 1인당 10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총급여 규모별 분포는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에 대하여 인당 50만원씩의 공제액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50만원은 1인당 결정세액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적용

-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1인당 결정세액은 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이므로, 나머지 50만원은 1인당 결정세액의 한도 내에서 적용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1인당 결정세액은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표 3] 근로소득자분 세수효과 추계: 2025년

총급여 규모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¹⁾ (명)	1인당 결정세액 (만원)	공제액 (만원)	세수효과 (백만원)
	(A)	(B)	$[C=50+\min(50, B)]$	$(-A \times C)$
1천만 이하	0	0.0	50	0
1.5천만 이하	1	1.6	52	-1
2천만 이하	12	2.3	52	-6
3천만 이하	358	7	57	-202
4천만 이하	6,376	23	73	-4,673
4.5천만 이하	11,907	50	100	-11,907
5천만 이하	15,352	86	100	-15,352
6천만 이하	29,717	150	100	-29,717
8천만 이하	33,066	312	100	-33,066
1억 이하	16,032	669	100	-16,032
2억 이하	13,862	1,545	100	-13,862
3억 이하	668	5,257	100	-668
5억 이하	247	9,950	100	-247
10억 이하	39	21,006	100	-39
10억 초과	9	67,116	100	-9
계	127,646	-	-	-125,781

주: 1) 2025년 혼인신고자 수(480,652명)에 2024년 혼인신고자 대비 근로소득자인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26.6%)을 곱해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을 추정한 후 총급여 규모별로 분배(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총급여 규모별 분포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종합소득자분 세수효과 추계

□ 2024 귀속연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의 비중은 20.2%로 나타남

- 혼인신고자 수는 2024년 혼인신고 건수의 두배($444,824\text{명} = 222,412\text{건} \times 2$)로 산출
-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한 종합소득자 인원은 89,786명으로 나타남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0 이하인 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표 4] 종합소득자의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 2024 귀속연도

(단위: 명, 건, 백만원)

종합소득 규모	혼인세액공제		결정세액	
	인원 ¹⁾ (A)	금액	인원	금액
계	89,786	41,417	89,786	261,220
0 이하	0	123	0	0
1천만 이하	10,406	4,100	10,406	8
2천만 이하	18,155	7,729	18,155	697
3.5천만 이하	26,482	12,318	26,482	8,497
4천만 이하	6,531	3,213	6,531	6,544
5천만 이하	9,695	4,816	9,695	16,941
6천만 이하	5,684	2,832	5,684	17,084
8천만 이하	5,903	2,947	5,903	31,818
1억 이하	3,009	1,502	3,009	28,340
2억 이하	3,056	1,527	3,056	62,266
3억 이하	465	232	465	24,854
5억 이하	266	133	266	25,415
7억 이하	58	29	58	8,926
10억 이하	33	17	33	7,257
10억 초과	43	22	43	22,573

주: 1)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0 이하인 인원(248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2025)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혼인신고자 수에 앞서 산출한 혼인신고자 대비 종합소득자인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 비중을 곱해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하고, 1인당 10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종합소득 규모별 분포는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에 대하여 인당 50만원씩의 공제액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50만원은 1인당 결정세액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적용
 -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1인당 결정세액은 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이므로, 나머지 50만원은 1인당 결정세액의 한도 내에서 적용
 - 2025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1인당 결정세액은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표 5] 종합소득자분 세수효과 추계: 2025년

종합소득 규모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¹⁾ (명)	1인당 결정세액 (만원)	공제액 (만원)	세수효과 (백만원)
	(A)	(B)	$[C=50+\min(50, B)]$	$(-A \times C)$
0 이하	0	0	50	0
1천만 이하	11,244	0	50	-5,631
2천만 이하	19,617	4	54	-10,562
3.5천만 이하	28,615	32	82	-23,489
4천만 이하	7,057	100	100	-7,057
5천만 이하	10,476	175	100	-10,476
6천만 이하	6,142	301	100	-6,142
8천만 이하	6,378	539	100	-6,378
1억 이하	3,251	942	100	-3,251
2억 이하	3,302	2,038	100	-3,302
3억 이하	502	5,345	100	-502
5억 이하	287	9,555	100	-287
7억 이하	63	15,390	100	-63
10억 이하	36	21,991	100	-36
10억 초과	46	52,495	100	-46
계	97,018	-	-	-77,223

주: 1) 2025년 혼인신고자 수(480,652명)에 2024년 혼인신고자 대비 종합소득자인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20.2%)을 곱해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을 추정한 후 종합소득 규모별로 분배(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종합소득 규모별 분포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 결과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근거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하고 공제액 등을 확대할 경우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2027년 2,030억원(근로소득세 1,258억원, 종합소득세 772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8,270억원(연평균 3,654억원)의 소득세 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향후 2년간 연간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2027년에는 2027년 중 혼인신고를 한 인원에만 대한 세수효과만 반영되지만, 2028년부터는 이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인원에도 대한 세수효과도 반영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합계	-2,030	-4,060	-4,060	-4,060	-4,060	-18,270	-3,654
근로소득세	-1,258	-2,516	-2,516	-2,516	-2,516	-11,320	-2,264
종합소득세	-772	-1,544	-1,544	-1,544	-1,544	-6,950	-1,390

- (징수기준) 소득세 세목별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2,030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1조 8,270억원(연평균 3,654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기준)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확대 및 근거법률 변경 (안 제59조의6)	-2,030	-4,060	-4,060	-4,060	-4,060	-18,270	-3,65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